

부가가치세분야 ③



글/ 임현석 세무사

1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그 전담종사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실관계)

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제48조(기금의 설치) 및 제5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에 의거 전력의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코자 정부(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시물의 위탁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동 기금으로부터 받음

Q 이와 같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전력산업기반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A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

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2. 유료TV채널 방송사업과 관련해 개발된 관련제반 정보용역 제공시 면세하는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 제공 해당여부

(사실관계)

유료TV 방송사업자로서 선진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문 및 컨설팅을 받고 있는바, 방송의 편성운영, 프로모션 운영분야에 대한 컨설팅으로서 성공적인 PPV운영에 관한 기술적 제반사항, 마케팅사항, 프로그래밍과 스케줄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A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기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유료TV채널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기 개발된 관련 제반 정보용역(편성운영, 프로모션, 시스템 분야의 기술, 마케팅, 프로그래밍과 스케줄 관련 제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3.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 및 타당성 등 조사용역 제공시 면세 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해당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 발전기획 본 타당성 조사용역(산업연망 및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이 면세하는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A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 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4.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의 과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건설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면세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계산서 제출기한 등

A 1)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3)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

15. 종합인테리어 사업자가 의료법인 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실내장식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Q 병원에 내장공사를 하고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공사금액으로만 공사를 하겠다는 바 병원이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종합인테리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끝>